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92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서범수의원안,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9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5.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서범수의원안,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한도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table> ○ 사후관리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대상 - 일반: (현행과 같음)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특례: <u>1조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박성민의원안)</u> <u>전체 중견기업 포함(정부안)</u> -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특례: <u>법인인 중소기업으로 한정(서범수의원안)</u> ○ 공제한도 상향 - 일반 가업상속: (현행과 같음) - 특구 가업상속: <table><tr><th rowspan="2">가업영위기간</th><th colspan="3">기회발전특구</th><th>도심융합특구</th></tr><tr><th>박성민의원안</th><th>구자근의원안</th><th>정부안</th><th>서범수의원안</th></tr><tr><td>10년 ~ 20년</td><td><u>400억</u></td><td><u>600억</u></td><td><u>한도 없음</u></td><td><u>한도 없음</u></td></tr><tr><td>20년 ~ 30년</td><td><u>600억</u></td><td><u>800억</u></td><td><u>한도 없음</u></td><td><u>한도 없음</u></td></tr><tr><td>30년 이상</td><td><u>1,000억</u></td><td><u>1,200억</u></td><td><u>한도 없음</u></td><td><u>한도 없음</u></td></tr></table> ○ 사후관리 - (현행과 같음)	가업영위기간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서범수의원안	10년 ~ 20년	<u>400억</u>	<u>600억</u>	<u>한도 없음</u>	<u>한도 없음</u>	20년 ~ 30년	<u>600억</u>	<u>800억</u>	<u>한도 없음</u>	<u>한도 없음</u>	30년 이상	<u>1,000억</u>	<u>1,200억</u>	<u>한도 없음</u>	<u>한도 없음</u>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서범수의원안																													
10년 ~ 20년	<u>400억</u>	<u>600억</u>	<u>한도 없음</u>	<u>한도 없음</u>																													
20년 ~ 30년	<u>600억</u>	<u>800억</u>	<u>한도 없음</u>	<u>한도 없음</u>																													
30년 이상	<u>1,000억</u>	<u>1,200억</u>	<u>한도 없음</u>	<u>한도 없음</u>																													

현행	개정안
1) 가업용 자산 40% 이상 유지 2) 가업 종사 3) 주식등 상속 시 지분 유지 4)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 90%유지 - <신설>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2조의2) ○ 요건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상속 - 가업상속공제(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것	1)~ 4) (현행과 같음) - <u>가업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박성민·구자근·서범수의 원안)</u> - <u>본사가 기회발전특구외 타 지역으로 이전 혹은 기회발전특구내 상시 근무인원이 전체 기업 상시근무인원의 절반 미만(정부안)</u>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 요건 완화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u>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 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함</u>)을 상속 (박성민의원안) - (현행과 같음)

* 서범수의원안 2024. 6. 4. 발의(의안번호 122), 박성민의원안 2024. 6. 25. 발의(의안번호 923), 구자근의원안 2024. 8. 8. 발의(의안번호 264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 4건의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혹은 도심융합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 등”이라 함)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안은 상속개시일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

라함)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현행의 2배로 상향하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 이전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박성민의원안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상향하며, 5년 이내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 이전 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특례 적용대상을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부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을 제외¹⁾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소재 본사 및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기업의 근무인원 중 50%이상일 것 등 요건을

1) 정부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중에서도 수도권지역 등 아래 지역은 제외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규정하면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중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내용임. 또한 사후관
리규정으로 본사의 의무적 상시근무 인원 요건을 5년간 충족하도
록 하고 있음.

서범수의원안은 전술한 개정안 등과는 달리, “도심융합특구” 내에
본사가 소재한 가업 중 법인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5년 이내 도심융합특구 외
의 지역 이전 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구분		일반 (현행)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서범수의원안
적용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1조원 미만 중견기업 추가	현행과 같음	전체 중견기업 추가	법인 중소기업만 적용
공 제 한 도	10년 ~ 20년	300억	400억	600억	한도없음	한도없음
	20년 ~ 30년	400억	600억	800억	한도없음	한도없음
	30년 이상	600억	1,000억	1,200억	한도없음	한도없음

□ 현행법²⁾은 중소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공제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³⁾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자산·지분·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상속세를 부과하여 경영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 승계라는 제도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금지되고, ②(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③(고용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근로자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④(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 ⁴⁾ 의 100%
공제 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사후관리 (5년간)	①(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②(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③(고용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 유지 ④(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 4건의 개정안은 지방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시 공제대상을 확대⁵⁾하고, 공제 금액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4)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5) 예외적으로, 서범수의원안은 법인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함.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특구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⁶⁾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음⁷⁾.

‘도심융합특구’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⁸⁾.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인구, 산업 등 수도권 과밀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비 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임.

그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50.6%)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765	516	51,836	516	51,770	515	51,673	514	51,713	515
수도권	25,851	2,179	26,021	2,193	26,069	2,196	26,086	2,197	26,190	2,206

자료: 통계청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기준 수도권 총생산은 1,137조원으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1,903	1,927	1,945	2,084	2,166
수도권	992	1,003	1,025	1,100	1,137
수도권 비중	52.1	52.0	52.7	52.8	52.5

자료: 통계청

둘째, 가업상속 공제 대상기업의 확대 및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의 상향은 매출액 및 기업자산 규모가 큰 기업으로 하여금 기회발전 특구 등으로의 이전을 유인할 수 있고, 큰 규모 기업의 이전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현재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다른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도 상속받는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면 공제한도액에 따른(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각 300억, 400억, 600억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들 큰 규모 기업의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것임.

셋째, 가업상속 공제확대의 혜택은 최대주주인 대표⁹⁾에게 귀속되는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생략)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데, 기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세제지원¹⁰⁾책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도 있음.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지분만큼 혜택이 귀속되지만, 상속 공제의 혜택은 대표에게 전액 귀속되므로, 기업 이전에 관한 경제적 유인으로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이전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양하고,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조차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이익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형량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확대가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특히,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비용과 경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기업 이전’을 선택할 기업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할 경우로 한정한다)
 -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둘째,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인 대표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수단이기도 하나, 이처럼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내린 의사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가령, 적지 않은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고 경영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이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이전비용, 경영의 비효율성 등은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최대주주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가 함께 부담하게 됨.

셋째, 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상속인과 현행 공제한도액(300억원~600억원)이 부족할 정도로 기업의 자산규모가 큰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특히 정부안의 경우는 상속재산의 공제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여 고액 자산가에 대하여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적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2014.12.)에서

사업용 자산의 무상취득에 대한 특권이 타당성 심사 없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는 경우 이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규모 연혁]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개정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09.1.1.~2011.12.31.	10년이상~15년미만	6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2012.1.1.~2013.12.31.	10년이상~15년미만	1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2017.12.31.	10년이상~15년미만	2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2018.1.1.~ 2022.12.31.	10년이상~20년미만	200억원
	20년이상~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2023.1.1.~ 현행	10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이상~30년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문 의 처
02)6788-5161